

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(갱신형)

하나 HSBC 생명보험주식회사

확 인 서

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(갱신형)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, 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. 끝.

2013년 3월 12일

하 나 HSBC 생 명 보 험 주 식 회 사

선임계리사 서 종 무

사업방법서

(사업방법서 별지)

무배당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(갱신형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명칭	세목	
무배당 ① 하나사랑담은정기보험 II (갱신형)	1 종	순수보장형
	2 종	만기지급형

※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안에는 특정단체,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

2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

구분	보험기간	보험료 납입기간	가입나이
최초계약	10년만기	전기납	만 15세 ~ 60세
갱신계약	10년만기	전기납	25세 ~ 64세
	80세만기	전기납	65세 ~ 74세

3. 보험료 납입주기

월납

4. 배당에 관한 사항

배당금 없음.

5. 갱신에 관한 사항

- (1)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, 보험료납입기일(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납입기일을 준용한다)까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, 이 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- (2)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%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어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도 “(1)”항에 따라 갱신한다. 다만, 이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하여 납입하여야 한다.
- (3) “(1)”항 및 “(2)”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아니한다.
 - 1)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“(5)”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
 - 2) 약관 제9조(계약의 소멸)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
- (4) “(1)”항 및 “(2)”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최초계약의 보험종목(1형(순수보장형) 또는 2형(만기지급형)) 및 보험기간으로 갱신한다. 다만, 갱신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가입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 80세만기로 갱신한다.
- (5)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80세 계약해당일로 한다.

- (6) “(1)”항 및 “(2)”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존용한다. 다만, 갱신전 계약의 약관이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되기 전 최종으로 변경된 약관을 존용한다.
- (7)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(이하 “갱신일”이라 한다)을 보장 개시일로 한다.
- (8)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나이에 의하여 재계산한다.
- (9) 갱신되는 계약은 갱신시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.
- (10)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각 해당 내용을 보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안내한다.
 - 1) “(3)”항에 따라 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 제한 사유
 - 2) “(6)”항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
 - 3) “(8)”항 및 “(9)”항에 따른 갱신계약의 보험료 변동내용
- (11)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- (1) 보험료의 선납시 할인
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표준이율로 할인한다.
- (2) 금융기관 자동이체시의 할인
회사는 보험료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경우에는 영업보험료의 1%를 할인하여 이를 영수한다.

7. 기타

- (1)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
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,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- (2) 기초율 변경시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보험료 산출기초율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도 보험료의 인하 또는 보험금을 증액 등을 할 수 있다.
- (3)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(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)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- (4) 종신보험으로의 전환
 - 1) 계약자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보험가입 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종신보험으로 변경(이하 “전환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환 후 계약의 보험가입 금액은 전환 전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.
 - 2) ‘1)’의 규정에 불구하고,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나이가 전환일 현재 5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 할 수 없다.
 - 3) 보험기간 만료 전 5년 이내에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‘1)’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할 수 없다.
 - 4)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장애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‘1)’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계약을 전환할 수 없다.
 - 5)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.
 - 6) 전환 후 계약은 전환 후 계약의 약관, 사업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
 - 7) 종신보험으로 전환시에 회사는 전환 전 계약의 해지환급금(특약포함)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전환 시점부터 계약자는 전환 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한다.

(별첨 제 1 호)

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의 서식

(별첨 제 2 호)

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